

제334회 정례회
2014. 9. 30(화)

심 사 보 고 서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4. 9. 30 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학철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4년 9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9월 16일

(제3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학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용 및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현실에 맞게 조문 개정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6조 등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현재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신용보증재단 운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재단”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충북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은 사업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본재산의 용도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재단의 정관,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채무 보증
2.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,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행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,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(생 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재단”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<u>충북신용보증재단</u> 을 말한다.	2. “재단”이란 충청북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<u>충북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</u> 을 말한다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업무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3조(업무)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</u>	8. <u>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 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은 사업</u>

현행	개정안
<p>9. (생략)</p> <p>제4조 ~ 제5조(생략)</p> <p>제6조(기본재산의 용도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재단의 정관,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</p> <p>2.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제7조 ~ 제8조(생략)</p> <p>제9조(사업평가) ①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,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~ 제5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본재산의 용도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재단의 정관,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의 금전 채무 보증</p> <p>2.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</p> <p>제7조 ~ 제8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사업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,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(생략)</p> <p>제10조(행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을</p> <hr/> <p>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</p> <hr/> <p>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</p> <hr/> <p>원하거나 유관기관, 단체에 그</p> <hr/> <p>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행정지원) 도지사는 재단을</p> <hr/> <p>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</p> <hr/> <p>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</p> <hr/> <p>나 유관기관, 단체에 그 지원을</p> <hr/> <p>요청할 수 있다.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